

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김법기 의원의 7인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1월 15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월 18일

3. 제안이유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가. 조례명 변경 :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

- 천연가스자동차→저공해 자동차(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)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6조의2 제1항→ 제58조제1항(안 제1조)
- 「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」 제85조의3제1호→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1항(안 제2조)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2조→ 제48조(안 제3조)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7조 제6의2호→ 제92조제9호(안 제9조)

다. 그 밖에 순화된 용어로 정비 (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)

- 정의는 → 뜻은, 규정에 의한 → 규정에 따라(른), 기타→그 밖에
교체→전환, 인→명, 또는→이나(나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과 “천연가스 자동차”를 “저공해 자동차”로 일괄 변경하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 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